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21 선고 2022가단1089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 론 종 결 2022. 8. 17.

판 결 선 고 2022. 9. 2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C는 50,246,575원과 그 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5. 30.부터,

나.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,493,450원과 그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5. 30.부터 각 2022. 7 26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윤희

별지